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0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1. 9. 7 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○ 제안자 : 마포구청장

○ 제안일 : 2021. 8. 27.

○ 회부일 : 2021. 8. 31. (의안번호 : 21-90)

2. 개정이유

○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한시기구(마포1번가연구단) 연장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

- 한시정원(3명) : 5급 1명, 6급 이하 2명
- 연장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(1년)

4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○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28조

5. 검토보고

○ 본 개정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마포구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 마포구 총 정원 1,448명으로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을 유지하는 내용으로, 부칙 제1조(시행일)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과 제2조(한시정원)에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임.

6. 종합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특화 조직의 필요성과 지역단위 사업 증가에 따라 자치구 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정책 연구·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, 마포1번가연구단 정원의 존속

기한 연장은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8조[1]에 근거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정책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축척된 데이터 및 자료를 해당 부서와 공유하여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일선 실무부서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기존 부서와의 역할 중복과 정책 혼선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) **'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' 제28조(한시정원)**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